

# 2020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
## 패션산업 융·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

기존 ‘패션 산업·상권’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‘융·복합 사업화 기술개발’ 자금을 지원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19일
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### 필독 사항

- 패션 융·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**사업화(상용화) 가능성이 높은 과제** 지원
-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**주관기관(기업)**이어야 함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 이상 필수(민간부담현금 시지원금의 10% 이상)
- 시민 불편사항 개선 또는 **편익증진 중심의 공공성 목적의 과제** 우대
-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**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** 제출 필수
-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
- 기술료 징수형 사업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내용 작성 요망

※ 서울산업진흥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※ 접수마감 당일,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

# 1. 사업 개요

## ▣ 사업목적

- 기존 '패션 산업·상권'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'융·복합 사업화 기술개발' 지원을 통해 '패션산업 경쟁력 강화' 및 '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' 도모

## ▣ 지원규모 및 기간: 총 20억원 내외

- 과제당 최대 3억원, 1년 이내
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

## ▣ 지원대상

- 지원대상: 기술성숙도가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(제품)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(기업·대학·연구소)
  - 컨소시엄형태: 기업(주관기관) + 대학/연구소(협력기관)
    -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(패션기업 또는 IT스타트업 분야) 필수
    - 협력기관은 대학, 연구소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하며, 동대문 상권 관련 기업 추가 참여 가능
    - ※ 협력기관 소재지 제한 없음
- <컨소시엄 구성 예시>
- 기업+대학=가능, 기업+연구소=가능, 기업+대학+연구소=가능, 기업+기업+대학(연구소)=가능
  - 기업+기업=불가, 대학(연구소)+대학(연구소)=불가, 대학+연구소=불가, 연구소+연구소=불가

# 2. 지원분야 및 내용

## ▣ 지원분야

- 패션과 혁신기술 융·복합을 통한 패션 분야 및 동대문 등 패션 상권 활성화
  -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(서비스)의 기술개발 과제
  - 지원분야
    - 기술 융·복합분야: 패션+혁신기술 적용된 전 분야
    - 패션분야: 의류(소재, 완제품), 가방, 신발, (의류)액세서리
    - 기술분야: 인공지능, 가상현실, 증강현실, 사물인터넷, 3D 프린팅 등 혁신기술
  - ※ 성능·디자인·공정 단순 개선, 요소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
  - 상권활성화분야: 동대문 등 패션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·플랫폼 구축
- 과제유형: 자유공모(혁신적 제품·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)

### 〈사업 가능 프로젝트 예시〉

- 혁신기술을 접목한 ‘V-커머스’ 운영 플랫폼 구축
  - 효과적 판매행위 수행을 위해 판매의상 가상피팅 시스템 등 구축
- 소비자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류 기획시스템 개발
  - 알고리즘 분석 통한 소비자 수요예측 및 맞춤형 제품기획 시스템 구축
- 의류 부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
  - ‘패션업체-부자재 시장’ 간 원활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

## ■ 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
  - 인건비,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성능·신뢰성 시험,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
  - ※ 인건비(현금)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% 이내에서 편성 가능
- 사업기간: 2020. 8. 1. ~ 2021. 7. 30.(1년)
  - ※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, 실제 사업기간은 제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기준

비목	세부비목	편 성 기 준(일부)
인 건 비	내부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</li> <li>· 참여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</li> </ul>
	외부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</li> <li>·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</li> </ul>
직 접 비	연구장비 · 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·재료구입비 등 (사업종료 2주 전 납품 완료)</li> </ul>
	연구 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제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</li> <li>- [여비, 교통비, 공공요금, 회의비,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(지원금의 1.5% 계상 요망,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가능) 등]</li> </ul>
	위탁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당해 과제의 임상·시험비 및 시험분석료, 시작품·시제품·시험설비 제작,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</li> </ul>
간접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비 17% 이내 계상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등 지원</li> </ul>
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구 장비 설치·구입·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될 수 있음</li> </ul>

※ 사업비 편성 세부 기준은 ‘[서울시산학협력사업 운영규정\(2017. 8. 7. 개정\)](#)’ 참고

### 3. 신청자격

#### ▣ 참여기관의 자격

- 주관기관: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
- 협력기관
  - 대학일 경우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(지역 제한 없음)
  - 연구소일 경우: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서울시 출연기관(지역 제한 없음)
  - 기업일 경우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
    - ※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,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

#### ▣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
- 과제책임자
  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부문책임자
  -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, 전임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
    - ※ 참여기관 및 과제(부문)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'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(2017.07.20. 개정)' 참고

#### ▣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,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기 지원·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&D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(성과조사 포함)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 - ※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- 파산·회생·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 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 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  - ※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  - ※ 서울시 R&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
-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4. 지원 원칙

### ▣ 기본 원칙

-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, 장비구입·시설 구축 등 지양
-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-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 - 보증기간: 사업기간+6개월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지원금에서 소급 가능)
  - 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

## ▣ 시지원금 지원 기준

-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  - 시지원금: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3억원, 1년 이내 지원
   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
  - 민간부담금: 총 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
    - ※ 민간부담금 중 시지원금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

## ▣ 기술료 징수 기준

- (기술료 징수대상) 과제 종료(조기완료 포함) 후 최종평가결과 '성공'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  - ※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, 기술실계약 체결 및 징수계획서(기술료 징수실적) 제출
- (기술료 징수방식) 주관기관은 「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
  - 정액기술료 :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	비고
중소기업	시지원금의 10%	-
중견기업	시지원금의 20%	-
대기업	시지원금의 30%	-

- ※ 중소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을 말함
- ※ 대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
- ※ 중견기업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
- 경상기술료 :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
  - ※ 기술실시계약 체결, 기술료 징수·납부 방식, 기술료 감면·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「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(2017. 8. 7.개정)」에 따름

## 5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### ▣ 추진절차

공고 및 접수 (3~4월)	사전검토 (4~5월)	선정평가 (5~6월)	심의위원회 (7월)	사업개시 (7월~)
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SBA	과제계획서 검토 (신청자격 등) SBA	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SBA	평가결과 심의·확정 서울특별시	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SBA

※ 상기 평가,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 ▣ 선정기준

구분	평가항목	배점
기술성 평가 (40)	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	15
	기술개발의 타당성	15
	기술개발 추진능력	10
시장성 평가 (60)	사업화 능력	10
	사업화 타당성	25
	시장진입 가능성	25

※ 선정평가는 진행여건(신청과제 수)에 따라 서류·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

#### 가점기준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

- 주관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(중복 가점 가능)인 경우 (각 1점)
  - ☞ 증빙서류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 확인서(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)
- ‘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’에서 최근 3년 이내 ‘우수’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(1점)
  - ☞ 증빙서류: 서울형R&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
- 주관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(1점)
  - ☞ 증빙서류: 상장,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
-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(1점)
  - ☞ 증빙서류: 건강보험자력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 발급)
-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시민 편익 증진 및 공공성 목적의 과제인 경우(1점)
  - ☞ 증빙서류: 우대사항 확인서(관련 분야 선택 및 정량적 시민 편익의 증진을 증빙할 만한 사유 작성 필수)
-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(3점)
  - ☞ 증빙서류: 투자 계약서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(2점)
  - ☞ 증빙서류: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)

- ※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(확인서 등)를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
- ※ 가점신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가점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점제외, 선정 취소,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※ 단,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

## 6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▣ 신청기간: 2020. 3.19.(목) ~ 4.23.(목) 18시까지

- ※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,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- ※ 마감일은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
- ※ 설문작성(<http://naver.me/xLRFL3xx>) 필수

### ▣ 신청방법: 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eoul.rnbd.kr/>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
#### ○ 온라인 신청 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온라인 설문조사	접수 확인 및 완료

#### <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>

#### ① 1단계: 회원가입(주관기관 과제책임자)

-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

#### ◆ 과제책임자 회원가입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방법

- SBA 홈페이지(<http://www.sba.seoul.kr>) **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**
-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eoul.rnbd.kr>) 과제책임자(개인회원) 로그인 후 작성(부가 정보 입력)

#### ◆ 참여기관 등록 방법

-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eoul.rnbd.kr>) 과제책임자(부문책임자) 개인회원 로그인 후
- 좌측 메뉴: 기관정보 → 기관등록 → 신규기관등록 클릭 후 작성

#### ② 2단계: 온라인 입력

-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eoul.rnbd.kr>)을 통해 직접 입력

#### ③ 3단계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과제계획서(한글 양식)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#### ④ 4단계: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(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모두 참여 필수)

- 설문작성(<http://naver.me/xLRFL3xx>)

#### ⑤ 5단계: 접수 완료 확인

- 4단계 완료 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→접수과제에서 “접수완료” 상태 확인

※ 주관기관은 1~5단계 모두 필요, 협력기관은 4단계만 필요

○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

연번	서 식 명	형 태	해당여부	
			필수	해당시
①	과제계획서 ※ 한글파일 작성 후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	HWP 및 PDF 파일	○	
②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※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	PDF 파일	○	
③	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※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	PDF 파일		○
④	설문조사(온라인 직접 입력) ※ 유의사항: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	온라인 입력	○	

## 7. 기타사항

### ▣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-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’ 을 적용함
-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제공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
☞ 설문작성하기 : (<http://naver.me/xLRFL3xx>)
- ⑦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

### ▣ 문의처

- 담당자 : 서울산업진흥원 R&D사업팀 이윤지 선임(rnd@sba.kr, 02-2222-3833)

끝.